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석사 학위논문

# 차등 원칙과 정당화 공동체

- 롤즈의 인센티브 논변에 대한  
코헨의 내재적 비판을 중심으로 -

2020 년 2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서양철학전공  
이 상 헌

# 차등 원칙과 정당화 공동체

- 롤즈의 인센티브 논변에 대한

코헨의 내재적 비판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김 현 섭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0 년 2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서양철학전공

이 상 헌

이상헌의 문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0 년 2 월

위 원 장 \_\_\_\_\_ 정 호 근 (인) 

부위원장 \_\_\_\_\_ 김 현 섭 (인) 

위 원 \_\_\_\_\_ 강 성 훈 (인) 

## 국 문 초 록

롤즈의 차등 원칙에 의하면, 질서 정연한 사회에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해당 불평등이 최소 수혜자의 지위를 극대화하는 데에 기여할 경우,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만 정당화된다. 특히 금전적 인센티브에 상응하는 정도의 경제적 불평등이 고숙련 노동자의 생산력을 고무시키고, 이렇게 향상된 생산력을 매개로 사회의 최소 수혜자들의 지위가 (경제적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 더 나아진다면, 금전적 인센티브에 상응하는 정도의 경제적 불평등은 차등 원칙에 의해 정당화된다.

코헨은 이처럼 롤즈가 금전적 인센티브에 상응하는 경제적 불평등을 차등 원칙에 입각하여 정당화하는 것은 오히려 롤즈가 차등 원칙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한 결과라는 '내재적 비판'을 제기한다. 코헨에 의하면, 롤즈적인 의미의 상호 존중 및 정당화 공동체의 가치가 실현된 사회에서 구성원들은 오히려 차등 원칙에 입각하여 고숙련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금전적 인센티브를 부인한다.

본 논문은 지금까지 롤즈의 인센티브 논변에 대한 코헨의 비판을 외재적인 비판의 맥락에서 조망해 온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롤즈에 대한 코헨의 내재적 비판이 가지는 독특한 이론적 의의에 주목한다. 즉, 코헨의 내재적 비판은 (롤즈 스스로도 간과하고 있는) 롤즈 이론의 급진성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아울러 이러한 코헨의 내재적 비판이 당장은 미완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지적한다.

주요어 : 차등 원칙, 인센티브 논변, 인센티브 민감성, 정당화 공동체, 상호 존중, 내재적 비판, 롤즈, 코헨

학 번 : 2013-22783

# 목 차

제1장 서(序)	1
제2장 롤즈의 인센티브 논변과 코헨의 내재적 비판	3
제 1 절 롤즈의 인센티브 논변	3
제 2 절 코헨의 내재적 비판: 이론적 동기	6
제 3 절 코헨의 내재적 비판: 첫 번째 의문	9
제 4 절 코헨의 내재적 비판: 두 번째 의문	16
제 5 절 코헨의 내재적 비판: 평등주의적 에토스	20
제3장 롤즈주의자들의 대응	22
제 1 절 느슨한 차등 원칙에 대한 옹호	22
제 2 절 코헨의 재(再)대응	24
제4장 차등 원칙과 정당화 공동체	27
제 1 절 상호 존중의 다양한 방식들	28
제 2 절 인센티브 민감성과 정당화 공동체	32
제5장 결(結)	39
참고문헌	40
Abstract	41

## 제1장 서(序)

롤즈는 자신의 저서 정의론에서 이른바 ‘공정으로서의 정의’ 개념에 의거하여, 질서 정연한 이상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합의하게 되는 정의의 원칙을 도출해 낸 바 있다. 이 중에서 두 번째 원칙인 차등 원칙은 이른바 질서 정연한 이상 사회 내에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어떤 경우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다루는 원칙이다. 차등 원칙에 의하면, 질서 정연한 이상 사회에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해당 불평등이 최소 수혜자의 지위를 극대화하는 데에 기여할 경우,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만 정당화된다. 이러한 차등 원칙에 입각해서 롤즈가 허용하는 대표적인 불평등이 바로 고속련 노동자에게 금전적 인센티브가 지급됨으로써 발생하는 불평등이다. 롤즈에 의하면 금전적 인센티브에 상응하는 정도의 경제적 불평등이 고속련 노동자의 생산력을 고무시키고, 이렇게 향상된 생산력으로 인해 해당 사회의 최소 수혜자들의 지위가 (경제적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 더 나아진다면, 금전적 인센티브에 상응하는 정도의 경제적 불평등은 차등 원칙에 의해 정당화된다.

이에 대해 코헨은 롤즈가 금전적 인센티브에 상응하는 경제적 불평등을 차등 원칙에 입각하여 정당화하는 것은 오히려 롤즈가 차등 원칙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한 결과라는 내재적 비판(*internal critique*)을 제기한다. 코헨에 의하면, 롤즈가 금전적 인센티브를 정당화하는 근거로서 차등 원칙을 활용하는 것은 롤즈가 자신의 이상 사회의 또 다른 특징으로 제시한 바 있는 정당화 공동체 및 상호 존중의 가치에 직접적으로 위배된다. 다시 말해, 코헨은 정당화 공동체 및 상호 존중의 가치가 실현된 사회의 구성원들은 오히려 차등 원칙에 입각하여 고속련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금전적 인센티브를 부인할 것이라고 본다.

본 논문은 코헨이 제시한 내재적 비판이 롤즈에 대한 유의미한 비판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핀다. 2장에서는 롤즈가 차등 원칙을 통해 이른바 ‘인센티브 논변’을 정당화하는 과정을 재구성하고, 이에 대한 코헨의 내재적 비판을 분석한다. 특히 코헨이 정당화 공동체 및 상호 존중의 가치에 입각해서 (코헨이 생각하기에는 롤즈가 받아들였어야 할) 차등 원칙에 대한 대안적 해석론을 제시하는 과정에 주목한다. 3장에서는 이러한 코헨의 내재적 비판에 대해 지금까지 제기된 주요한 반론들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코헨의 내재적 비판에 맞서서 롤즈의 차등 원칙 해석론 및 이에 입각한 인센티브 논변을 옹호하기 위해 제기되었던 반론들이 사실은 롤즈를 충분히 옹호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코헨의 내재적 비판에 암묵적으로 동조해 주는 면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낼 것이다. 4장에서는 정당화 공동체 및 상호 존중의 가치를 통해서 차등 원칙에 대한 특정한 해석론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인센티브 논변을 부인하고자 하는 코헨의 시도가 미완성에 그친다는 점을 논증할 것이다. 즉, 롤즈가 제시한 정당화 공동체 및 상호 존중의 가치는 코헨의 생각과는 달리 차등 원칙에 대한 특정한 해석론을 지지할 정도로 충분히 구체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힌다. 이를 위해 정당화 공동체 및 상호 존중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듯 보이면서, 동시에 차등 원칙에 입각하여 금전적 인센티브에 상응하는 경제적 불평등이 허용되는 롤즈적 이상 사회에 대한 간단한 스케치를 시도할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롤즈의 차등 원칙 해석론 및 이에 입각한 인센티브 논변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코헨이 정당화 공동체 및 상호 존중과 같은 추상적인 롤즈적 개념에 대해 추가적 확장extension을 시도하지 않는 이상, 해당 개념에만 의존하여 자신의 내재적 비판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없다는 점을 드러내는 데에 의의가 있다.

## 제2장 롤즈의 인센티브 논변과 코헨의 내재적 비판

### 제1절 롤즈의 인센티브 논변

롤즈가 제시한 차등 원칙에 따르면 질서 정연한 이상 사회에서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은 해당 사회의 최소 수혜자들의 지위를 극대화하는 경우,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만 정당하다. 가령, 사회의 구성원 중 능력 있는 자들에게 금전적 인센티브가 지급되어 그들의 생산성이 제고되고, 사회 전체적으로 증대된 생산량이 최소 수혜자의 지위를 극대화하는 데에 기여한다면, 해당 금전적 인센티브로 인해 발생한 소득 격차는 차등 원칙에 의해서 정당화된다.

차등 원칙과 관련하여 (...) 기업가에게 허용된 보다 큰 기대치는 그들로 하여금 노동자 계층의 장기적인 상황을 향상시키는 일을 하도록 고무시키게 된다. 보다 나은 전망은 그들에게 인센티브로 작용함으로써 경제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혁신이 더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게 된다.

위의 인용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롤즈는 기업가를 비롯한 능력 있는 자들 집단이 이른바 ‘인센티브 민감성incentive sensitivity’을 보인다는 점을 근거로, 최소 수혜자들의 지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금전적 인센티브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을 정당화하고 있다. 여기서 특징적인 점이 있다면, 롤즈가 차등 원칙에 입각한 인센티브 논변을 개진할 때, 능력 있는 자들 집단이 보이는 인센티브 민감성을 일종의 주어진 사실 혹은 주어진 사회 현상으로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가를 비



못한 능력 있는 자들 집단이 위의 인용문에서 묘사된 바와는 조금 다른 동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굳이 금전적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더라도 자신의 생산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 등은 차등 원칙에 입각한 인센티브 논변에서 고려되고 있지 않다.

이처럼 특정 집단에서 관찰되는 인센티브 민감성을 주어진 사실 혹은 주어진 사회적, 경제적 현상으로 전제한 뒤, 이러한 현실적인 제약 안에서 최소 수혜자의 지위가 극대화된 상태를 모색하려는 롤즈의 접근은 차등 원칙을 비롯한 정의 원칙의 적용 범위를 개개인의 동기 구조 및 행동으로까지 확장시키지 않고 오로지 사회의 기본 구조로 한정하는 데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사회 정의 원칙의 일차적 주제는 사회의 기본 구조로서, 이는 주요 사회 제도들을 하나의 협동 체계로서 구성하는 것이다. (….) 제도를 위한 정의 원칙은 개인, 그리고 특정 상황에서 개인의 행동들을 규율하는 원칙들과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두 가지 종류의 원칙은 각각 다른 주제에 적용되므로 분리시켜서 논의되어야 한다.

즉, 롤즈는 차등 원칙을 비롯한 자신의 정의 원칙이 구성원들 개개인의 동기 구조를 규율하는 원칙이 아니라 오로지 사회의 기본 구조만을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원칙이기를 기대한다. 여기서 사회의 기본 구조란 ‘사회의 주요한 정치, 사회 제도들이 하나의 사회적 협력 체계로 결합하는 방식 혹은 기본적 권리들과 의무들을 배정하고 지속적인 사회 협력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분배를 규제하는 방식’이다. 롤즈가 차등 원칙을 비롯한 정의 원칙의 적용 범위를 사회의 기본 구조의 설계 방향에만 한정

뒤 이를 일상적 결정을 규율하는 윤리 원칙과 구분하는 이유는, 한 사회의 기본 구조라는 것이 시민들의 목표와 열망, 성격, 기회, 능력 등에 심대한 영향(profound effect)을 미치는 배경적 제도로서 대단히 특수한 성질을 갖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차등 원칙을 통해 금전적 인센티브가 정당화된다는 논변과 차등 원칙이 오로지 기본 구조 및 제도에만 적용된다는 주장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가? 정의 원칙이 사회의 기본 구조에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이기 때문에 차등 원칙 역시 사회의 기본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어야 하는지 규율하는 원칙이다. 그렇다면 차등 원칙은 사회의 기본 구조가 최소 수혜자의 지위를 극대화하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만을 허용하는 제도여야 함을 규율한다. 따라서 능력 있는 자들 집단의 인센티브 민감성을 전제할 때, 이들에게 금전적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기본 구조 및 제도는 인센티브 금액에 상응하는 불평등을 통해 최소 수혜자의 지위를 (인센티브 금액에 상응하는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 비해) 향상시키는 데에 성공하고 있으므로, 최소 수혜자의 지위를 극대화하는 데에 필요한 불평등만을 허용하고 있는 제도로서 차등 원칙을 통해 정당화된다.

## 제2절 코헨의 내재적 비판: 이론적 동기

그런데 코헨이 생각하기에 롤즈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능력 있는 자들에게 지급되는 금전적 인센티브를 정당화하는 것은 롤즈 스스로가 차등 원칙을 제대로 적용 또는 해석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잘못된 이론적 귀결에 불과하다. 문제의 핵심은 롤즈가 차등 원칙에 입각한 인센티브 논변을 전개하면서, 능력 있는 자들 집단의 인센티브 민감성을 주어진 사실 혹은 주어진 사회 현상으로서 전제한 데에 있다. 코헨의 내재적 비판에 대해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코헨이 어떠한 점에 주목하여 자신의 비판을 시작하는지 그 이론적 동기를 간단하게 짚어본다.

먼저 코헨은 능력 있는 자들 집단의 인센티브 민감성의 성격에 주목한다. 코헨에 따르면 이들의 인센티브 민감성은 능력 있는 자들 집단이 오로지 금전적 인센티브가 지급되어야만 자신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이다. 다시 말해 능력 있는 자들은 금전적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않더라도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이다. 물론 일정 범위의 금전적 인센티브는 그것이 없을 경우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 코헨은 이러한 종류의 금전적 인센티브의 예로서, 능력 있는 자들로 하여금 업무의 강도가 객관적으로 지나치게 높은 직업에 종사케 하기 위해 필요한 인센티브, 또는 특정 직업의 업무를 전혀 수행하고 싶어 하지 않는 자가 해당 직업에 종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인센티브 등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인센티브가 지급될 만한 사례 자체는 통계적으로 매우 드문 데 반해, 롤즈가 인센티브 논변을 통해서 허용한 경제적 불평등의 정도에는 명확한 한계가 없다. 심지어 롤즈 자신은 차등 원칙을 통해서 대량의 불평등 deep inequality까지 정당화될 수 있음을 암시하기가

지 한다.1) 이러한 점에서 코헨은 롤즈가 차등 원칙에 입각한 인센티브 논변을 개진하면서 일종의 주어진 사실로서 전제하고 있는 능력 있는 자들의 인센티브 민감성의 대부분은 이들의 의도적인 행위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강조한다.2)

코헨이 다음으로 주목하는 것은 롤즈가 자신의 질서 정연한 이상 사회를 일종의 ‘정당화 공동체(justificatory community)’로 생각했다는 점이다. 롤즈가 정당화 공동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른바 ‘상호 존중의 의무(duty of mutual respect)’라는 개념을 통해서 구성원들 각자가 자신의 삶의 방식을 다른 구성원들에게 성실하게 해명하고 정당화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자신의 행위가 다른 사람의 삶의 조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상대방이 납득할 만한 타당한 이유를 제시해야만 한다. 코헨이 보기에 롤즈적 이상 사회에서 능력 있는 자들 역시 상호 존중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정당화 공동체의 일원이고, 이들의 인센티브 민감성이 최소 수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능력 있는 자들로서는 금전적 인센티브 지급 여하에 따라 생산량을 조절하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타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이처럼 코헨은 능력 있는 자들이 보이는 대부분의 인센티브 민감성이 의도적 행위의 결과라는 점, 그리고 롤즈적 이상 사회는 정당화 공동체라는 점에 주목한 뒤, 다음과 같이 두 단계 의문의 형태로 롤즈의

---

1) *A Theory of Justice (Revised Edition, 1999)*, p.7.

2) 앞으로 논의의 편의상, 능력 있는 자들이 금전적 인센티브 없이 자신의 생산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오로지 금전적 인센티브가 지급될 경우에만 자신의 생산성을 극대화시키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능력 있는 자들이 인센티브 민감성을 보인다’고 표현할 것이다. ‘인센티브 민감성을 보이는 것’ 외에 추후 등장할 ‘인센티브에 민감한 일상적 결정’, ‘인센티브 논변의 소전제를 참으로 만드는 행위’ 등은 모두 동일한 의도적 행위를 지칭한다.

인센티브 논변에 대한 자신의 내재적 비판을 구성한다. 첫째, 롤즈의 인센티브 논변은 능력 있는 자들의 인센티브 민감성을 전제로 한 채 차등 원칙에 입각하여 인센티브 불평등을 옹호하는데, 우리는 능력 있는 자들의 의도적 행위로 인해 발생한 인센티브 민감성을 그냥 주어진 사실로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의도적인 인센티브 민감성 역시 차등 원칙에 비추어 정당화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아야 하는 것 아닌가? 특히 능력 있는 자들이 정당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상호 존중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면, 자신의 의도적인 인센티브 민감성이 차등 원칙에 비추어 타당한 이유에 입각해 있다는 점을 해명해야 하는 것 아닌가? 둘째, 만약 우리가 첫 번째 의문을 받아들여서 능력 있는 자들의 의도적인 인센티브 민감성이 윤리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도 추가적으로 검증하기 시작한다면, 롤즈가 인센티브 논변을 통해서 허용한 대부분의 인센티브 민감성은 차등 원칙의 정신에 위배되는 민감성으로 판명 나는 것 아닐까? 즉, 능력 있는 자들이 차등 원칙에 비추어 성공적으로 해명할 수 있는 의도적인 인센티브 민감성의 사례는 지극히 드물지 않을까?

### 제3절 코헨의 내재적 비판: 첫 번째 의문

이제 코헨이 제시한 첫 번째 의문부터 살펴보자. 코헨은 인센티브 논변의 핵심 근거가 되는 인센티브 민감성 자체를 아무런 윤리적 검증 없이 주어진 사회 현상으로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민감성을 발생시킨 능력 있는 자들의 의도적 결정이 차등 원칙의 정신에 비추어서 정당화될 만한 것인지 검토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이러한 의문을 보다 엄밀하게 뒷받침하기 위해서 코헨은 다음과 같은 유비적인 사례를 제시한다.<sup>3)</sup> 유괴범이 어린이를 유괴한 뒤 부모에게 몸값을 요구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자.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급한 대로 유괴범에게 몸값을 지급해야 한다는 생각이 일정한 호소력을 지닌다면, 그러한 생각은 다음과 같은 실천적 논변의 형태로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 몸값 논변 *ransom argument*

어린이는 부모와 함께 있어야 한다.

유괴범은 몸값을 지불받아야 비로소 어린이를 부모에게 보낸다.

따라서 유괴범에게 몸값을 지불해야 한다.

논변의 대전제는 유괴 사건에 얽힌 당사자들, 심지어 유괴범 본인까지도 동의할 법한 규범적 진술이다. 논변의 소전제는 몸값을 지급받아야만 인질을 풀어주는 유괴범의 행동에 대한 사실적 진술이다. 유괴범에게 몸값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은 위의 두 전제로부터 따라 나온다.

이제 이러한 몸값 논변을 유괴범 스스로가 부모에게 발화하는 가상적 상황을 떠올려 보자.

---

3) *Rescuing Justice and Equality*, pp.38-41.

**유괴범** : 어린 아이는 부모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에 우리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만큼, 당신들은 나에게 몸값을 지불해야 한다. 왜냐하면 나는 몸값이 지불되어야만 비로소 어린 아이를 당신들에게 보내 줄 것이기 때문이다.

**부모** : 그런데 왜 당신은 몸값이 지불되어야만 비로소 어린 아이를 우리에게 보내 주는 것인가? 당신은 어린 아이가 부모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 맞는가?

이 가상의 대화에서 특징적인 것이 있다면, 몸값 논변의 발화자가 논변의 소전제(유괴범은 몸값을 지급받아야만 어린이를 놓아 준다)에서 기술되고 있는 사실의 당사자라는 점이다. 즉, 유괴범은 몸값 논변의 소전제가 참이 되게끔 행동하는 *making the minor premise true* 당사자이다. 유괴범은 반드시 몸값을 지급받지 않더라도 어린이를 놓아 주는 것이 가능하므로, 논변의 소전제가 참이 되지 않게끔 행동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 때문에 유괴범의 발화는 부모로부터 다음과 같은 반박을 초래하게 된다. 위의 대화에도 잘 나타나 있듯이, 부모는 어떻게 몸값 논변의 대전제(어린이는 부모와 함께 있어야 한다)가 참이라고 믿는 자가 논변의 소전제를 참으로 만드는 행동을 할 수 있는냐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코헨은 이러한 상황과 인센티브 문제 사이에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 **인센티브 논변 incentive argument**

최소 수혜자의 지위가 극대화되어야 한다.

능력 있는 자들은 인센티브가 지급되어야 생산력을 극대화한다.

따라서 능력 있는 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한다.

앞의 몸값 논변과 마찬가지로, 논변의 대전제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모두 동의하는 규범적 진술(차등 원칙)이다. 소전제는 공동체의 구성원들 중 능력 있는 자들 집단의 행동에 대한 사실적 진술이다. 능력 있는 자들 집단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은 위의 두 전제로부터 따라 나온다.

이번에도 인센티브 논변을 능력 있는 자 스스로가 최소 수혜자에게 발화하는 가상적 상황을 구성해 보자.

**능력 있는 자** : 당신들의 지위가 극대화되어야 한다는 데에 모두가 동의하고 있으므로, 당신들은 우리가 금전적 인센티브를 보장받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금전적 인센티브가 지급되어야만 비로소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때문이다.

**최소 수혜자** : 그런데 당신들은 왜 금전적 인센티브가 지급되어야만 비로소 생산성을 극대화하는가? 당신은 정말로 우리의 지위가 극대화되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는 것 맞는가?

유괴범 스스로가 발화하는 몸값 논변과 마찬가지로, 능력 있는 자가 발화하는 인센티브 논변은 발화자 스스로가 논변의 소전제를 참으로 실현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즉, 능력 있는 자는 반드시 금전적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않더라도 생산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으므로, 인센티브 논변의 소전제가 참이 되지 않게끔 행동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최소 수혜자는 논변의 대전제(최소 수혜자의 지위가 극대화되어야 한다)가 참이라고 믿는 자가 어떻게 논변의 소전제를 참으로 만들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의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



한 상황에서 능력 있는 자들이 최소 수혜자의 문제 제기에 대응하여 자신의 인센티브 요청을 합당하게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이 왜 금전적 인센티브에 민감함으로써 논변의 소전제를 참으로 실현시키고 있는지 그 이유를 추가적으로 제시해야만 하는 것처럼 보인다. 즉, 자신이 의도적인 인센티브 민감성을 통해 논변의 소전제를 참으로 만들고 있음에도, 여전히 논변의 대전제의 지지자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을 정당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코헨은 (롤즈 스스로도 받아들이고 있는) 정당화 공동체 및 상호 존중의 가치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러한 추가적인 정당화 요구 및 대응은 롤즈의 질서 정연한 이상 사회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루어질 상호 교류justificatory exchange라고 주장한다. 롤즈가 제시한 상호 존중의 의무 개념을 한 번 살펴보자.<sup>4)</sup>

상호 존중은 여러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타인들의 처지를 그들의 관점에서, 그들의 선good에 대한 그들의 입장에서 보고자 하는 우리들의 의지에서, 그리고 타인들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가짐 등에서이다.

요청을 받았을 때는 관련된 자들에게 정의의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즉 그것들은 성실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그것들이 모든 사람의 선이 고려된 상호 수용할 만한 정의관에 의해 규정된 타당한 이유들sound reasons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제시되어야 한다.

---

4) *A Theory of Justice (Revised Edition, 1999)*, p.297.

능력 있는 자들이 금전적 인센티브 지급 여하에 따라 생산량을 조절하는 행위는 분명 최소 수혜자들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능력 있는 자들이 위에서 제시된 상호 존중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왜 인센티브에 민감한지, 다시 말해 왜 인센티브 논변의 소전제를 참으로 실현시키고 있는지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타당한 이유를 제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보인다. 즉, 코헨에 의하면 롤즈가 차등 원칙의 적용 범위를 사회의 기본 구조로만 한정하고, 이러한 차등 원칙에 입각하여 인센티브 논변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능력 있는 자들의 인센티브 민감성을 주어진 사회 현상으로 전제한 것과는 다르게, 진정한 의미의 롤즈적 정당화 공동체에서는 능력 있는 자들의 인센티브 민감성에 대한 윤리적 차원의 의문이 자연스럽게 제기되고, 능력 있는 자들은 상호 존중의 의무를 이행하고 자신의 인센티브 요청을 떳떳하게 관철시키기 위해서 관련된 해명을 하게 된다.

특히 코헨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최소 수혜자들이 능력 있는 자들의 인센티브 민감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역설적이게도 능력 있는 자들을 정당화 공동체의 동료로서 존중해 주는 태도라고 해석한다. 최소 수혜자들이 능력 있는 자들의 인센티브 민감성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윤리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곧 ‘당신은 인센티브 논변의 소전제에 기술된 바와는 충분히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금전적 인센티브에 민감한 행위를 하기로 선택했는지 설명해 달라’는 요청이자 기대인 셈이다. 오히려 최소 수혜자들이 능력 있는 자들의 인센티브 민감성을 주어진 사실로 간주하고 인센티브 논변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은 이들을 ‘달리 행위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공동체 안의 동료’가 아닌 ‘달리 행위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공동체 밖의 외부자’로 취급하는 것이다.<sup>5)</sup>

이처럼 능력 있는 자들의 인센티브 논변에 대해서 최소 수혜자를 비롯한 여타 구성원들이 추가적인 정당화를 요청하고, 능력 있는 자들도 이러한 정당화에 신실하게 응하는 공동체에서는 논변의 대전제(차등 원칙)가 규범적으로 수행하게 되는 역할도 사뭇 달라진다. 앞의 대화에도 드러나 있듯이 최소 수혜자가 능력 있는 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최소 수혜자의 지위 극대화에 신경 쓰는 차등 원칙의 지지자이면서 어떻게 동시에 논변의 소전제를 참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지 해명해 줄 것’, 달리 말하면 ‘인센티브에 민감한 일상적 행위가 차등 원칙에 비추어 정당한지 설명해 줄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제 논변의 대전제인 차등 원칙은 능력 있는 자의 일상적 삶의 방식의 정당성을 검증하는 기준으로 작동하기 시작한다. 능력 있는 자들은 금전적 인센티브가 적게 지급되자 생산량을 줄이는 행위, 혹은 금전적 인센티브가 더 많이 지급되는 직업을 선택하는 행위 등을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이 최소 수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극대화시키는 데에 관심이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보여야 한다. 나는 이와 같이 사회의 기본 구조나 제도의 설계 방향을 규율하는 것을 넘어서, 능력 있는 자를 비롯한 사회 구성원들의 일상적 삶의 방식의 정당성까지도 검증하는 형태의 차등 원칙을 ‘확장적expanded’ 차등 원칙이라고 부르겠다.

---

5) 이는 우리가 외교상 적국(敵國)의 행동에 대처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우리는 외교상 적국이 취하는 행동에 대해서, 해당 국가가 달리 행위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 하에 윤리적 해명을 요청하지 않는다. 그보다 우리는 외교상 적국의 행동을 ‘주어진 사실’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follow-up measure를 강구한다. 코헨에 의하면 최소 수혜자들이 능력 있는 자들의 인센티브 민감성을 주어진 사실로 간주하고 인센티브 논변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일견 능력 있는 자들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최소 수혜자가 능력 있는 자들을 공동체의 동료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태이다. 즉, 인센티브 논변이 추가적인 정당화의 요구 없이 그 자체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능력 있는 자-최소 수혜자의 관계가 마치 외교상 적국들 사이의 관계처럼 비(非)공동체non-community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러한 확장적 차등 원칙은 롤즈가 인센티브 논변을 개진하면서 사용한 차등 원칙과는 그 규범적 성질이 완전히 다르다. 앞서도 검토했듯이, 롤즈는 차등 원칙의 적용 범위를 사회의 기본 구조 및 제도에만 한정했기 때문에 능력 있는 자들이 각자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보이는 인센티브 민감성을 차등 원칙에 따른 검증 대상이 아닌 주어진 사실로서 전제할 수 있었다. 나는 롤즈가 활용한 차등 원칙을 앞의 확장적 차등 원칙과 구분하기 위해서 ‘구조적structural’ 혹은 ‘통상적conventional’ 차등 원칙이라고 부르겠다.

결국 코헨이 자신의 첫 번째 의문을 통해 시도하고자 한 내재적 비판의 첫 걸음은 바로 상호 존중의 가치가 실현된 롤즈적 정당화 공동체에서 차등 원칙은 구조적, 통상적으로 해석되어 능력 있는 자들의 인센티브 민감성을 무비판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확장적으로 해석되어 능력 있는 자들의 인센티브 민감성의 정당성을 검증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코헨에 의하면, 롤즈가 차등 원칙을 구조적, 통상적으로만 해석하여 능력 있는 자들의 인센티브 민감성을 주어진 사실로 간주한 채 인센티브 논변을 개진한 것은 롤즈 스스로가 중시했던 상호 존중 및 정당화 공동체의 가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 제4절 코헨의 내재적 비판: 두 번째 의문

이제 코헨의 첫 번째 의문이 타당하다는 전제 하에 그가 제시한 두 번째 의문에 대해서 살펴본다. 능력 있는 자들이 확장적 차등 원칙의 적용을 받기 시작한다면, 이들은 금전적 인센티브에 민감한 일상적 결정들이 차등 원칙의 가치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야 하는데, 사실 이들이 차등 원칙과 양립 가능한 것으로 내세울 수 있는 인센티브 민감성의 이유들은 지극히 제한적이지 않느냐는 것이 코헨의 두 번째 의문이다. 코헨이 어떻게 자신의 두 번째 의문을 정립하는지 살펴보자.

앞에서 우리는 상호 존중 및 정당화 공동체를 통해서 도출된 코헨의 확장적 차등 원칙이 개개인의 일상적 결정, 특히 능력 있는 자들의 일상적 인센티브 민감성까지 규율하는 원칙이라는 것을 보았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확장적 차등 원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능력 있는 자들의 인센티브 민감성을 윤리적으로 검증하는지 모호한 상태이다. 어느 정도의, 그리고 어떤 종류의 인센티브 민감성이 확장적 차등 원칙의 기준 아래 정당화될 수 있고, 정당화될 수 없는가? 가령, 어떤 고숙련 노동자가 유명 호텔의 회원권을 구매할 수 있을 정도의 금전적 인센티브가 지급되어야만 자신의 생산력을 극대화한다고 했을 때, 이 고숙련 노동자는 차등 원칙과 양립 가능한 방식으로 인센티브에 민감한가? 한편 어떤 고숙련 노동자는 곤경에 처한 자신의 이웃을 충분히 돕기 위해 필요한 정도의 금전적 인센티브가 지급되어야만 자신의 생산력을 극대화한다고 했을 때, 이 고숙련 노동자를 여전히 최소 수혜자의 지위가 극대화되어야 한다는 원칙의 지지자로 볼 수 있는가? 확장적 차등 원칙이 롤즈적 정당화 공동체에서 능력 있는 자들의 인센티브 민감성의 당부를 합당하게 판정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평가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다.

먼저 우리는 차등 원칙에 비추어서 능력 있는 자의 의도적인 인센티브 민감성을 검증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사실 차등 원칙을 일상생활에서 가장 완벽하게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금전적 인센티브 지급 여하에 관계없이 항상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것, 즉 (심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은 한도 내에서) 인센티브 민감성을 아예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오로지 최소 수혜자를 위해 자신의 최대 생산성을 항상 유지하는 상태는, 설령 그것이 심리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능력 있는 자에게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공동체의 구성원들도 능력 있는 자들이 이러한 상태를 항상 유지해 주기를 윤리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코헨은 능력 있는 자들이 일정한 범위에서는 인센티브에 민감한 결정을 내리는 방식으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할 최소한의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고 보고, 이를 ‘개인적 특권 *individual prerogative*’라고 명명한다.<sup>6)</sup> 그리고 능력 있는 자들이 인센티브에 민감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각자의 개인적 특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차등 원칙에 위배된 결정을 내렸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한다. 인센티브에 민감한 결정을 내린 이상 가장 이상적인 방식으로 차등 원칙을 이행한 것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자기 이익을 추구함과 동시에 자신의 생산성을 극대화함으로써 최소 수혜자의 지위 향상에 나름의 방식으로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능력 있는 자가 확장적 차등 원칙에 비추어서 자신의 인센티브 민감성을 성공적으로 정당화한다는 것은 곧 자신의 인센티브 민감성이 개인적 특권의 행사 범위 안에 있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령, 어떤 의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하려고 하고, 그러한 집을 마련할 만한 금전적

---

6) *Rescuing Justice and Equality*, pp.61.

인센티브가 확보되어야만 비로소 자신의 생산성을 극대화한다고 해 보자. 여기서 의사는 일종의 인센티브 민감성을 보이고 있으므로 최소 수혜자의 지위 향상에 아무런 조건 없이 기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기서 의사가 인센티브에 민감한 개인적인 이유, 즉 가족이 모두 모여 살만한 돈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이유는 의사의 조건적인 기여를 정당화하기에 부족해 보이지 않는다. 달리 말하자면, 의사의 인센티브 민감성은 개인적 특권을 행사한 결과로 볼 수 있고, 의사는 이러한 점을 근거로 자신이 차등 원칙의 지지자이면서도 동시에 왜 인센티브 논변의 소전제를 참으로 만들고 있는지를 성공적으로 해명할 수 있게 된다.

요컨대 능력 있는 자들은 각자의 개인적 특권을 원용함으로써 자신의 인센티브 민감성을 확장적 차등 원칙에 입각하여 정당화할 수 있게 되는데, 이제 남은 문제는 이러한 개인적 특권의 범위를 좁게 설정할지 아니면 넓게 설정할지 이다. 나는 여기서 개인적 특권의 범위를 가급적 좁게 설정하는 확장적 차등 원칙을 엄격한strict 차등 원칙, 반대로 개인적 특권의 범위를 가급적 넓게 설정하는 확장적 차등 원칙을 느슨한lax 차등 원칙으로 부를 것이다. 엄격한 차등 원칙에 따르면 개인적 특권의 행사 범위 자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확장적 차등 원칙과 양립 가능한 것으로서 능력 있는 자들이 호소할 수 있는 인센티브 민감성의 이유들prerogative-based reasons이 제한적이다. 반면 느슨한 차등 원칙에 따르면 개인적 특권의 행사 범위가 폭넓기 때문에, 확장적 차등 원칙과 양립 가능한 것으로서 능력 있는 자들이 호소할 수 있는 인센티브 민감성의 이유들이 다양하다. (설명 과정에서 이미 드러나 있지만, 엄격한 차등 원칙과 느슨한 차등 원칙 모두 확장적 차등 원칙을 전제한다. 정확히 말하면 확장적 차등 원칙에는 엄격한 버전과 느슨한 버전이 있다. 따라서 엄격한 차등 원칙과 느슨한 차등 원칙의 차이는 능력 있는 자들이

자신의 인센티브 민감성을 추가적으로 ‘해명해야’ 한다는 공통된 전제 하에, 그 해명이 얼마나 어려운지 다소 수월한지의 차이이다. 반면 차등 원칙이 구조적 혹은 통상적으로 해석되는 공동체에서는 능력 있는 자들의 인센티브 민감성이 주어진 사실로 전제되고 능력 있는 자들 역시 자신의 인센티브 민감성을 차등 원칙의 관점에서 해명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엄격 또는 느슨의 구분이 의미 없다.)

코헨은 롤즈적 의미의 상호 존중이 실현되는 정당화 공동체에서 확장적 차등 원칙은 엄격하게 해석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만, 여기서는 첫 번째 의문에서처럼 상세한 논증을 시도하지는 않는다. 코헨에 따르면, 아무리 능력 있는 자들에게 개인적 특권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최소 수혜자의 지위가 극대화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진심으로 동의하는 자라면, 가급적 자신의 인센티브 민감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 금전적 인센티브가 주어졌어야만 비로소 열심히 일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자신은 최소 수혜자의 지위가 극대화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진심으로 동의한다고 떳떳하게 with straight face 말하기는 힘들지 않겠느냐는 것이 코헨의 두 번째 의문이다. 따라서 능력 있는 자들이 원용할 수 있는 개인적 특권의 사례는 지극히 제한적이다. 우리가 코헨의 두 번째 의문까지 받아들인다면, 롤즈가 자신의 구조적, 통상적 차등 원칙을 통해서 허용한 인센티브 민감성은, 설령 일부 사례가 개인적 특권의 행사 사례로서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진정한 의미의 롤즈적 정당화 공동체에서는 설득력을 얻기 힘들다.



## 제5절 코헨의 내재적 비판: 평등주의적 에토스

지금까지 살펴 본 코헨의 내재적 비판을 두 단계의 의문의 형태로 다시 한 번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 첫 번째 의문

능력 있는 자들로서는 단순히 인센티브 논변을 발화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왜 인센티브 논변의 소전제를 참으로 실현시키고 있는지, 즉 왜 의도적으로 인센티브 민감성을 보이고 있는지와 관련해서 차등 원칙에 입각한 정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비로소 인센티브를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지 않나?

### 두 번째 의문

그런데 능력 있는 자들로서는 대부분의 사례에서 자신들이 왜 인센티브 논변의 소전제를 참으로 실현시키고 있는지, 즉 왜 의도적으로 인센티브 민감성을 보이고 있는지와 관련해서 차등 원칙에 입각한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기 힘들지 않나?

첫 번째 의문과 두 번째 의문은 능력 있는 자들이 발화하는 대부분의 인센티브 논변이 왜 롤즈적 이상 사회에서는 차등 원칙에 의해서 정당화되기 힘든지 알려준다. 먼저 첫 번째 의문은 코헨이 차등 원칙에 대한 구조적, 통상적 해석 대신 확장적 해석을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두 번째 의문은 코헨이 확장적 차등 원칙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느슨한 해석 대신 엄격한 해석을 채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코헨에 의하면 첫 번째 의문과 두 번째 의문 모두 상호 존중의 가치가 통용되는

롤즈적 정당화 공동체에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의문이다. 이러한 의문들이 수용된 사회에서는 롤즈가 인센티브 민감성을 주어진 사실로 전제하면서 허용한 대부분의 인센티브들이 차등 원칙의 이름 아래 부인되고, 능력 있는 자들은 아주 제한적인 사례들을 제외하고는 인센티브 없이 자신의 생산성을 극대화한다. 코헨은 이러한 상태를 이른바 ‘평등주의적 에토스(egalitarian ethos)’가 실현된 상태라고 부른다.

요컨대 이른바 ‘엄격한 확장적 차등 원칙’의 규율을 받는 고숙련 노동자들은 자연스럽게 평등주의적 에토스를 실현하게 된다. 코헨의 기획 안에서 이러한 엄격한 확장적 차등 원칙이 롤즈적인 상호 존중 및 정당화 공동체의 가치로부터 도출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코헨은 롤즈가 제시한 개념들 안에 이미 평등주의적 에토스의 도출 근거들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는 셈이다. 즉, 코헨은 롤즈 스스로가 받아들이고 있는 상호 존중 및 정당화 공동체의 개념만으로도 평등주의적 에토스가 충분히 뒷받침된다는 내재적 비판을 전개함으로써, 롤즈를 급진적으로 독해할 수 있는 여지를 보여주고 있다. 코헨에 의하면, 롤즈가 구조적, 통상적 차등 원칙에 입각하여 인센티브 논변을 개진하고 심지어 대량의 불평등까지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은 자신의 이론이 가지고 있는 급진적인 면모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패착인 것이다.

## 제3장 롤즈주의자들의 대응

### 제1절 느슨한 차등 원칙에 대한 옹호

일부 롤즈주의자들은 코헨의 내재적 비판 중 두 번째 의문에 주목한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코헨은 자신의 두 번째 의문, 즉 확장적 차등 원칙의 엄격한 해석론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했다. 롤즈주의자들은 타당하게도 바로 이 점을 지적한다. 왜 상호 존중의 가치가 실현되는 정당화 공동체에서 확장적 차등 원칙은 반드시 엄격하게만 해석되어야 하는가? 대표적으로 예술러의 경우 확장적 차등 원칙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자기 이익에 입각한 개인적 특권의 사례들이 차등 원칙과 양립 가능한 예외로서 인정될 수 있다면, 코헨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종류의 추가적인 특권들도 차등 원칙과 양립 가능한 예외들로서 허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자기 이익에 입각한 특권 이외에 예술러가 추가적 특권으로서 제시하는 유형들로는, 1) 타인에 대한 호의적 감정으로 이들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하면서 인센티브를 필요로 하는 경우, 2) 타인에 대한 윤리적 의무감으로 이들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하면서 인센티브를 필요로 하는 경우, 3) 최소 수혜자의 지위를 극대화하는 문제 이외에 다른 사회적 가치를 증진시키는 활동을 하면서 인센티브를 필요로 하는 경우 등이 있다.<sup>7)</sup> 능력 있는 자들이 이러한 사유들로 인해 인센티브에 민감하다면, 최소한의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특권을 행사하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똑같이 차등 원칙과 양립 가능한 인센티브 민감성의 사유들로 보아야 할 것 같다.

가령, 고숙련 노동자가 자신의 이름을 내건 예술 재단을 설립하

---

7) "Liberalism, Equality, and Fraternity", pp.101-102.

는 데에 필요한 대량의 금전적 인센티브가 보장될 경우에만 생산력을 극대화하겠다고 결의한 경우를 생각해 보자. 여기서 고속런 노동자의 인센티브 민감성을 허용할 경우 그 고속런 노동자는 상당한 소득 불평등을 향유하게 되겠지만, 이러한 종류의 인센티브 민감성이 앞에서 자기 이익을 위해 개인적 특권을 행사한 경우와 다르게 차등 원칙과 양립 불가능하다고 보기도 힘들다. 에슬런에 의하면, 이러한 식으로 대량의 소득 불평등도 다양한 종류의 추가적 특권들을 통해서 정당화될 수 있다면, 사실 롤즈가 인센티브 논변을 통해서 허용했던 인센티브 불평등과 거의 유사한 정도의 불평등이 이러한 개인적 특권 및 추가적 특권의 행사 범위에 있다고 주장한다. 요컨대 에슬런은 차등 원칙과 양립 가능한 개인적 특권 혹은 추가적 특권의 범위가 코헨의 생각보다 훨씬 더 넓다고 주장함으로써, 코헨과는 달리 느슨한 차등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셈이다.

## 제2절 코헨의 재(再)대응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예술인이 과연 코헨의 내재적 비판에 맞서서 롤즈의 인센티브 논변을 제대로 옹호해 주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예술인은 롤즈가 허용했던 대규모 인센티브가 개인적 특권의 범위 내에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대부분의 인센티브는 차등 원칙에 의해 부인된다고 보는) 코헨에 맞서 롤즈를 구제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예술인이 하고 있는 작업이 정확히 무엇인가? 예술인은 능력 있는 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금전적 인센티브를 필요로 하게 되는 이유들 중 차등 원칙의 검증을 통과할 수 있을 만한 이유들의 유형 및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작업은 곧 능력 있는 자들이 자신의 인센티브 요구를 온전히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사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인센티브 민감성을 차등 원칙에 입각해서 '정당화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즉,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든 예술인은 확장적 차등 원칙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에서 코헨에 동의한다. 다만, 확장적 차등 원칙의 관점에서 타당하다고 평가받을 만한 민감성의 이유들을 상당히 폭넓게 인정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코헨과 달리 확장적 차등 원칙에 대한 느슨한 해석론을 지지하고 있는 것뿐이다.

이에 반해 롤즈가 대규모 인센티브를 허용했던 근거는 무엇이었는가? 롤즈가 대량의 불평등까지 염두에 두고 금전적 인센티브를 폭넓게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은 차등 원칙의 적용 범위를 오로지 사회의 기본 구조로만 한정하고 능력 있는 자들의 일상적인 인센티브 민감성은 검증의 영역에서 면제되는 주어진 사실로서 간주했기 때문이다. 롤즈의 접근에서 능력 있는 자들이 자신이 인센티브에 민감하게 된 일상적 이유를 차등 원칙에 입각하여 해명해야 하는 상황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 따

라서 롤즈와 에슬런이 결과적으로 비슷한 양의 인센티브를 허용하고 있더라도 이러한 인센티브를 허용하는 규범적 근거는 완전히 다르다. 즉, 에슬런은 차등 원칙에 대한 확장적 해석론에 개입함으로써, 롤즈의 차등 원칙 해석론에 암묵적으로 반대하고 오히려 코헨의 진영에 서 있다.

코헨의 다음 인용문을 살펴보면, 코헨도 에슬런의 비판이 자신의 차등 원칙 해석론에 대한 실질적 비판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자신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한다.

특권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에슬런은 롤즈가 주장했던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엄격한 구분을 없앤다. (...) 에슬런은 사적인 차원에서의 경제적 선택이 정의에 대한 판단으로부터 면제된다는 롤즈의 주장에 대한 나의 비판을 받아들이고 있다. 롤즈는 능력 있는 자들의 동기가 어떻든 상관없이 단지 인센티브를 통해 이들의 동기를 자극하는 것이 최소 수혜자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인센티브로 인한 불평등을 정당화한다. 에슬런은 이를 옹호하지 않는다. 따라서 나는 에슬런이 나에게 제기하는 비판은, 에슬런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롤즈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고, 오히려 롤즈의 견해에 대한 중대한 수정이라고 본다.<sup>8)</sup>

이와 관련하여, 앞에서 검토해 보았던 코헨의 첫 번째 의문과 두 번째 의문을 상기해 보자. 위의 인용문에서 코헨은 에슬런이 자신의 첫 번째 의문 혹은 문제 제기, 즉 능력 있는 자들의 동기 구조를 주어진 사실로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문제 제기에 동의했다고 지적한다. 결국 에슬런은 코헨의 두 번째 의문 혹은 문제 제기, 즉 능력 있는 자들이 차등

---

8) *Rescuing Justice and Equality*, pp.393.

원칙의 관점에서 정당화될 만한 인센티브 민감성의 이유를 제시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는 문제 제기에만 반대함으로써 코헨을 비판하는 셈이다. 이러한 에슬런의 비판이 코헨의 입장에 대한 합당한 비판일 수 있는지, 다시 말해 롤즈적 공동체에서 확장적 차등 원칙은 에슬런의 제안대로 느슨한 방식으로 읽혀야 하는지는 본 논문의 주제가 아니다. 그보다 나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집중하려고 한다. 왜 코헨의 첫 번째 의문은 모두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롤즈적 상호 존중의 가치가 실현된 정당화 공동체에서는 능력 있는 자들의 인센티브 민감성이 당연히 차등 원칙의 검증 대상이 되는가? 다음 장에서는 이 문제를 자세히 다룰 것이다.

## 제4장 차등 원칙과 정당화 공동체

이번 장에서는 코헨이 생각한 대로 정당화 공동체 및 상호 존중의 가치를 통해서 그의 첫 번째 의문이 뒷받침되는지 여부를 다룬다. 과연 능력 있는 자들로서는 자신이 왜 인센티브 논변의 소전제를 참으로 만들고 있는지를 추가적으로 정당화하지 않는 한 금전적 인센티브에 대한 자신의 요구를 정당화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결코 납득시킬 수 없는가? 달리 말하자면, 차등 원칙이 구성원들 개개인의 동기 구조를 직접적으로 규율하지 않고 오로지 기본 구조의 설계 방향만을 규율한다면, 능력 있는 자들 개인의 인센티브-민감성도 차등 원칙에 입각한 확장적 검증의 대상이 되지 않을 텐데, 이렇게 차등 원칙이 구조적, 통상적으로 해석되는 사회는 진정한 의미의 정당화 공동체가 될 수 없는 것인가?

코헨에 의하면 상호 존중의 가치가 실현되고 있는 정당화 공동체에서 능력 있는 자들은 자신이 애당초 왜 인센티브 민감성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는 이상, 자신이 발화하는 인센티브 논변이 구성원들에게 받아들여지기를 기대할 수 없다. 코헨이 그리고 있는 롤즈적 이상 사회에서 능력 있는 자들은 최소 수혜자들을 존중하므로, 자신들의 인센티브-민감성이 최소 수혜자들의 물질적 조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상, 애당초 왜 자신들이 인센티브에 민감한지, 민감성은 차등 원칙의 가치에 비추어 정당화될 만한 이유에 기반하고 있는지 등의 문제를 성실하게 해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서도 살펴보았듯이 코헨은 유괴범의 사례를 실마리 삼아 위와 같은 내재적 비판을 전개했는데, 아래에서는 또 다른 사례를 통해서 과연 코헨의 첫 번째 의문이 타당한지 살펴본다.



## 제1절 상호 존중의 다양한 방식들

갑(甲)은 기후 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와 관련된 환경 운동을 조직 중이다. 을(乙), 병(丙), 정(丁) 등은 기후 변화 문제가 시급하고 이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갑이 조직하는 환경 운동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판단 하에 갑의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중 을은 다른 구성원들에 비해 운동에 덜 참여하고 있다. 을은 갑의 운동에 상대적으로 덜 참여하는 이유가 자신이 다른 구성원들에 비해 개인 시간을 훨씬 더 중시하기 때문이며, 자신은 충분한 개인 시간을 보장받아야만 비로소 갑의 환경 운동에 더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을의 주장을 실천적 논변의 형태로 재구성한다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 시간 논변 **time argument**

갑의 환경 운동은 오랫동안 지속되고 활성화되어야 한다.

을은 충분한 개인 시간이 확보되어야만 운동에 적극 참여한다.

따라서 을에게 충분한 개인 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논변들과 유사하게, 논변의 대전제는 갑을 비롯해서 환경 운동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규범적 진술이다. 논변의 소전제는 을의 이른바 ‘개인 시간 민감성’에 대한 사실적 진술이다. 논변의 결론은 이러한 대전제와 소전제로부터 따라 나온다.

이제 소전제에서 기술된 행동의 당사자인 을이 위의 논변을 갑에게 직접 발화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을 : 환경 운동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활성화되어야 한다는데 우리가 모두 동의하고 있으므로, 당신은 내가 상대적으로 많은 개인 시간을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원하는 정도의 충분한 개인 시간이 확보되어야만 비로소 환경 운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갑 : 그런데 왜 당신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개인 시간이 확보되어야만 비로소 환경 운동에 열성적으로 참여하는가? 당신은 나의 환경 운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에 정말로 동의하는가?

앞의 몸값 논변이나 인센티브 논변과 마찬가지로, 위의 발화가 특징적인 것은 발화자 을이 시간 논변의 소전제가 참이 되도록 실현시키고 있는 직접적인 당사자라는 점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을이 시간 논변을 발화함으로써 ‘나는 개인 시간에 민감하기 때문에 환경 운동에 제한적으로밖에 참여할 수 없다’는 해명을 한 것이 을의 행동에 대한 충분한 정당화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이다. 위의 대화에서 볼 수 있듯이, 갑은 환경 운동이 최대한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대전제에 찬성하는 을이 어떻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개인 시간을 필요로 하는지를 의문시하고 있다. 즉, 갑의 입장에서는 을이 단순히 개인 시간이 상대적으로 더 필요하기 때문에 환경 운동에 제한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환경 운동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데도 왜 다른 구성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개인 시간을 필요로 하는지, 즉 왜 시간 논변의 소전제를 참으로 실현시키고 있는지에 대해 추가적인 정당화까지 해야 한다고 보는 셈이다.

이러한 갑의 추가적인 의문과 정당화 요구는 어느 정도 합당할

수 있다. 을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개인 시간을 요구함에 따라, 갑이 조직하는 운동은 진행 속도라든지 활성화되는 정도에 있어서 심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을이 조금 덜 개인 시간에 민감했다라면, 갑의 환경 운동이 더 빠른 속도로 조직되었을 수 있고, 을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들이 운동에서 분담해야 하는 역할이 경감되었을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을이 속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환경 운동의 동료로서 을에게 충분한 해명을 요구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다. 만약 을이 이러한 추가적인 정당화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을로서는 무엇 때문에 남들보다 더 많은 개인 시간을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일정한 사유로 인해 개인 시간을 더 필요로 하지만 여전히 자신이 환경 운동의 진정한 지지자일 수 있다는 점을 다른 구성원들에게 납득시켜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갑을 비롯해서 다른 구성원들이 이러한 추가적인 정당화를 요구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상황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을이 환경 운동에 제한적으로만 참여함으로써 운동이 활성화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유 때문에 개인 시간을 더 필요로 하는지를 묻고 이에 대한 정당화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을의 사적인 영역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오히려 환경 운동에 신실하게 참여하고자 하는 을의 의욕을 훼손시키는 요구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갑을 비롯한 운동의 다른 참여자들은 을이 보이고 있는 개인 시간 민감성의 정도가 어디까지나 을이 자신의 개인적인 용무와 환경 운동 사이의 균형을 맞추어 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결과이고, 이에 대해서 다른 누군가가 윤리적 판단을 시도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상호 존중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 결과 이들은 을의 개인 시간 민감성을 주어진 사실로서 받아들이고, 이 한도 내에서 을을 비롯한 구성원들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만약 구성원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을은 시간 논변을 발화하는 것만으로도 (논변의 소전제를 왜 참으로 실현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해명하지 않고) 자신의 참여가 저조한 것에 대한 충분한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을이 발화하는 시간 논변에 대해서 갑을 비롯한 다른 구성원들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는 셈인데,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종류의 가능성 중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지를 논하려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개인 시간에 상대적으로 더 민감하기 때문에 환경 운동에 제한적으로 밖에 참여할 수 없다’는 해명이 충분한 해명으로 인식되어, 시간 논변을 발화하는 것만으로도 성공적인 대인적 정당화를 수행한 것으로서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공동체 관념community conception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을이 자신의 개인 시간 민감성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당화를 시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상호 존중의 가치를 저버렸다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호 존중의 가치를 고려해서 시간 논변만으로도 충분한 정당화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하는 공동체를 충분히 떠올려 볼 수 있다는 것이다.

## 제2절 인센티브 민감성과 정당화 공동체

이제 다시 인센티브 문제로 돌아가 보자. 앞에서 살펴 본 사례는 인센티브 문제와 일정 부분 유사한 측면을 공유하고 있다. 을이 환경운동에 더욱 효율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개인 시간을 필요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능력 있는 자들은 최소 수혜자의 지위를 극대화하는 것에 더욱 효율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 일정한 인센티브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을이 공부를 하거나, 여가를 즐기거나, 혹은 별다른 일을 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개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듯이, 능력 있는 자들은 사치재를 소비하거나 저축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인센티브를 활용할 수 있다. 요컨대 을이나 능력 있는 자들 모두 공동체 차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이슈들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헌신하기 위해서, 나름의 개인적 영역personal room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능력 있는 자들이 인센티브 논변을 발화함으로써 자신에게 일정한 양의 금전적 인센티브가 지급되기를 요구할 때, 최소 수혜자들은 능력 있는 자들 각자가 자신의 인센티브 민감성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고, 그러한 이유가 차등 원칙에 입각하여 정당화될 만한 이유인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해명하기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런데 한편으로 최소 수혜자들은 이러한 추가적인 정당화 요구를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능력 있는 자들이 자신의 인센티브 민감성에 대해 합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은 곧 이들이 무엇 때문에 일정한 양의 인센티브를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사유가 차등 원칙에 입각하여 정당화될 만한 사유인지 등을 추가적으로 해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최소 수혜자들은 이처럼 확장적 차등 원칙

에 입각하여 금전적 인센티브의 용처를 밝히고 이것에 대한 정당화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능력 있는 자들 개개인의 사적 영역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이라는 판단 하에, 이들의 인센티브 민감성에 대해서는 윤리적 검증은 자제하려는 태도를 취할 수 있다.

여기서 두 번째 상황은 위의 사례에서 환경 운동의 구성원들이 각자의 개인 시간 민감성에 대해서는 서로 윤리적 검증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상황과도 유사하다. 환경 운동의 사례에서 운동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보이는 개인 시간 민감성의 높고 낮음은 결국 갑의 환경 운동에 각자가 기여하는 '정도'로 해석될 수 있을 텐데, 위에서 우리는 '환경 운동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왜 이 정도로만 기여하는지 해명해 달라'는 요구 자체가 상당히 억압적인 요구로 여겨지는 공동체의 관념이 존재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인센티브 문제에서 두 번째 상황 역시 이와 유사한 사회적 에토스가 드러나고 있다. 능력 있는 자들이 자신의 생산성을 극대화시킴으로써 최소 수혜자의 지위 향상에 기여하는 상황에서, 이들이 개별적으로 보이는 인센티브 민감성의 높고 낮음은 결국 최소 수혜자의 지위를 극대화하는 이슈에 능력 있는 자 각자가 기여하는 '정도'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두 번째 상황에서 공동체 구성원들은 개인적인 인센티브 민감성에 대한 정당화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곧 '당신은 최소 수혜자의 지위가 극대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동의하면서 왜 이 정도로만 기여하는지' 해명해 달라는 요구이고, 이는 능력 있는 자들의 사적인 결정에 지나치게 개입할 수밖에 없는 요구라고 생각하는 셈이다.

결국 두 번째 상황에서 최소 수혜자를 비롯한 공동체 구성원들은 능력 있는 자들이 각자 보이는 인센티브 민감성은 이들이 최소 수혜자의 지위 향상이라는 공동체의 이슈에 어느 정도로 참여할 것인지 각자의 삶 속에서 고민한 결과라고 이해한 뒤, 이러한 판단을 존중한 채 인

센티브 민감성의 주어진 제약 안에서 최소 수혜자의 지위를 극대화할 수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특히 이 경우 능력 있는 자들이 발화하는 인센티브 논변은 추가적인 정당화 없이도 능력 있는 자들의 인센티브 요청에 대한 온전한 정당화 기능을 수행하게 될 텐데, 여기서 최소 수혜자를 비롯한 다른 구성원들이 이러한 인센티브 논변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코헨의 생각과는 달리 능력 있는 자들을 공동체 외부의 존재로 간주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이들을 최소 수혜자의 지위 향상이라는 공동체의 이슈에 나름의 방식(각자의 인센티브 민감성의 제약 안에서 생산성을 극대화시키는 방식)으로 기여하는 동료 시민으로 존중해 주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능력 있는 자들의 인센티브 논변이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전혀 다른 두 가지의 방식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여기서 어떠한 종류의 결속의 형태가 롤즈적인 의미의 정당화 공동체 및 상호 존중의 가치가 실현된 공동체라고 볼 수 있는가? 코헨은 오로지 첫 번째 상황의 공동체만이 진정한 의미의 롤즈적 공동체라고 전제 한 뒤, 이러한 공동체에서 차등 원칙은 능력 있는 자 개개인의 인센티브 민감성의 당부까지 검증하는 확장적 원칙으로 해석된다는 주장을 했다. 그렇다면, 코헨의 주장대로 인센티브 민감성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당화를 요구하지 않는 두 번째 상황의 공동체에서는 상호 존중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는가? 롤즈적 의미의 상호 존중이란 구성원들이 각자의 삶의 방식을 다른 구성원들에게 신실하게 정당화하고, 특히 각자의 행위가 다른 구성원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때에는 타당한 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하는데, 후자의 공동체에서는 능력 있는 자들의 삶의 방식, 그리고 이러한 삶의 방식에 기반한 인센티브 정책에 대해서 타당한 이유가 제시되고 있지 않은가?

앞에서도 인용한 바 있듯이, 공동체의 구성원이 상호 존중의 의

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제시해야 하는 ‘타당한 이유’란 ‘모든 사람의 선이 고려된 상호 수용할 만한 정의관에 의해 규정된’ 이유를 의미한다. 이러한 정의를 고려할 때에, 두 번째 상황에서 능력 있는 자들이 인센티브 논변을 발화하면서 제시하는 이유가 ‘타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어떠한 근거도 없다. 두 번째 상황에서 능력 있는 자들은 자신이 제한적으로만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이유가 ‘금전적 인센티브에 민감하기 때문’이라는 해명만을 제시하고, 추가적으로 무엇 때문에 일정량의 금전적 인센티브를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금전적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것이 차등 원칙에 비추어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않는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유를 제시하는 것은 일견 충분한 정당화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두 번째 상황에서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능력 있는 자들의 사적인 영역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오히려 부분적인 이유만을 요구하고, 추가적인 정당화를 요구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자제하고 있다. 즉, 두 번째 상황에서처럼 구성원들이 서로의 사적인 영역을 침해하는 것을 강하게 경계하는 공동체에서는 능력 있는 자들이 인센티브 논변만을 발화하면서 제시한 이유도 ‘상호 수용할 만한 정의관’에 입각한 이유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는 환경 운동의 사례에서 운동에 제한적으로만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시간 논변을 통해 ‘나는 개인 시간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운동에 제한적으로 참여한다’는 해명만을 하고, 추가적으로 무엇을 하기 위해 개인 시간을 남들보다 더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개인 시간을 보내는 행동이 환경 운동의 중요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않고도, 충분히 자신의 삶의 방식을 정당화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요컨대 나는 물즈적 의미의 정당화 공동체 및 상호 존중의 개념만으로는, 인센티브 논변이 공동체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두 가지 가



능한 방식 중 그 어떠한 것도 확정적으로 배제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나의 제안에 대해, 코헨은 다음과 같은 근거에서 여전히 두 번째 상황의 공동체는 롤즈적 의미의 상호 존중이 실현된 정당화 공동체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반론을 할 수 있다. 차등 원칙을 확장적으로 적용하는 공동체에서 검증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생산량 조절 행위가 능력 있는 자들 개개인의 사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인 것은 맞지만, 이러한 개개인의 인센티브 민감성이 차등 원칙에 입각한 검증으로부터 면제되기 힘든 특수한 맥락이 있다. 능력 있는 자들 개개인이 금전적 인센티브 지급 여하에 따라 자신의 생산량을 조절하는 행위들은 최소 수혜자들의 물질적 조건과 삶에 (사회의 기본 구조나 제도만큼이나) 심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집단적 관행을 구성constitute한다. 왜냐하면 능력 있는 자들이 집단적 인센티브 민감성을 보임에 따라 최소 수혜자의 지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금전적 인센티브 지급이 불가피해진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집단적 인센티브 민감성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일정 범위의 금전적 인센티브 지급 없이도 사회 전체의 생산량이 유지되고, 최소 수혜자의 지위도 더욱 향상될 수 있었을 것이다. 즉, 능력 있는 자들의 집단적 인센티브 민감성은 그 존부(存否)에 따라 최소 수혜자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정당화 공동체의 구성원들, 그 중에서도 특히 최소 수혜자의 입장에서는 그 윤리적 타당성을 검증해 볼 필요성을 느낄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집단적 인센티브 민감성 자체가 능력 있는 자들 개개인의 ‘행위’를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라면, 최소 수혜자의 입장에서는 능력 있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을 자연스럽게 제기할 수 있다. “당신들이 우리를 존중한다면, 집단적 인센티브 민감성을 발생시킨 당신들의 행위가 차등 원칙에 비추어 여전히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설명해야 한다.” 즉, 사안의

성격을 고려할 때에 최소 수혜자들이 능력 있는 자들의 인센티브 민감성을 단순히 사적인 영역으로만 간주한 채, 이들의 인센티브 논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상호 존중의 가치가 실현된 롤즈적 이상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먼저 명확히 해야 할 것은 사회의 기본 구조 혹은 제도만큼이나 최소 수혜자들의 지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특정 다수의 능력 있는 자들의 ‘집단적’ 인센티브 민감성이 아니라 능력 있는 자의 ‘개인적’ 인센티브 민감성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능력 있는 자들의 개인적 인센티브 민감성이 누적되어 집단적 인센티브 민감성이 구성되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에서 능력 있는 자들의 집단적 인센티브 민감성 때문에 최소 수혜자의 지위가 충분히 극대화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각자의 개인적 인센티브 민감성만큼은 여전히 윤리적 검증으로부터 면제될 수 있다고 본 이유가 무엇이었던지 상기해 보자. 이는 다음과 같은 호혜적인 고려가 공동체 차원에서 호소력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능력 있는 자들이 보이는 개인적 인센티브 민감성은 이들이 ‘최소 수혜자의 지위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공동체의 목표에 동참하는 것과 개인적인 욕구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고 각자의 삶 속에서 고민한 결과이며, 이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한 개별적인 참여의 ‘정도’는 (설령 그 참여의 정도가 다소 미진하고, 비슷한 참여의 정도가 누적된 결과 최소 수혜자의 지위가 이상적으로 극대화되지 못하더라도) 다른 공동체 구성원들에 의한 윤리적인 검증의 대상이 되기에 적절치 않다.

이와 달리 능력 있는 자들이 금전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공모 혹은 결탁한 뒤 일정량의 금전적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않으면 생산량을 조절하기로 결의한 경우 등과 같이, 능력 있는 자들 개인의 인센티브 민감성이 더 이상 각자의 삶에서의 개별적인 고민의 결과가 아니라 어디까지

지나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행동의 일부라면, 이들의 민감성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제각각 존중받아야 한다는 호혜적 고려도 호소력을 가지기는 힘들 것이다.

따라서 상호 존중의 가치가 실현되는 롤즈적 공동체라고 해서, 집단적인 인센티브 민감성이 다른 구성원들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치면 곧바로 이를 구성하는 개별적인 인센티브 민감성이 공적인 해명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집단적 인센티브 민감성이 발생하는 과정에 능력 있는 자 개개인이 어떻게 기여하는지가 먼저 가려진 뒤에 비로소 능력 있는 자 개인의 인센티브 민감성에 대해 공적인 해명을 요청할 것인지 여부도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만약 능력 있는 자 개개인은 각자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인센티브 민감성을 보인 것뿐이고, 최소 수혜자의 지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집단적 인센티브 민감성은 이러한 개인적 인센티브 민감성들이 다분히 비(非)조직적인 방식으로 누적된 결과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개개인의 인센티브 민감성에 대해 윤리적 검증을 자제하려는 공동체가 반드시 롤즈적 의미의 상호 존중의 가치가 훼손된 공동체라고 단정하기 힘들다.

결국 여전히 상호 존중이나 정당화 공동체의 추상적 개념만으로는 구조적 해석과 확장적 해석 중 무엇이 더 롤즈적인 차등 원칙 해석인지 가려낼 수 없다. 따라서 코헨이 자신의 첫 번째 의문 혹은 문제 제기를 성공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까지 제시한 또 다른 종류의 공동체의 관념이 제대로 된 공동체의 관념이 아니거나 혹은 적어도 롤즈적이지 않다는 점을 추가로 논증해야 한다. 이러한 점이 보완되지 않는다면, 코헨은 롤즈의 인센티브 논변에 대한 내재적 비판의 첫 단추인 확장적 해석을 롤즈의 체계 내에서 도출해 낼 수 없다.

## 제5장 결(結)

지금까지 코헨의 롤즈 비판과 관련해서 대부분의 후속 논의들은 코헨의 두 번째 문제 제기, 즉 엄격한 차등 원칙과 느슨한 차등 원칙의 대립에 초점을 맞춰왔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롤즈적 정당화 공동체에서 능력 있는 자들이 개인적 인센티브 민감성을 추가적으로 정당화해야 한다는 사실, 즉 롤즈적 정당화 공동체에서 능력 있는 자들이 확장적 차등 원칙의 규율을 받는다는 사실이 먼저 전제되어야 비로소 우리는 이러한 확장적 차등 원칙을 엄격하게 혹은 느슨하게 구체화시킬 것인지를 논할 수 있다.

그런데 정작 롤즈적인 의미의 상호 존중 혹은 정당화 공동체의 개념들이 이러한 확장적 차등 원칙을 유일하게 지지해 주는지는 상당히 불확실했다. 롤즈적 정당화 공동체에서 구성원들이 각자의 삶을 정당화함으로써 서로를 존중한다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개인의 삶의 모든 측면이 공개되고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코헨은 적어도 금전적 인센티브에 민감한 결정은 다른 구성원들에게 공개되고 해명되어야 할 삶의 방식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나 우리는 롤즈적인 상호 존중의 가치와 양립 가능한 듯 보이면서, 동시에 이러한 종류의 결정은 오히려 공개되거나 해명되어서는 안 된다는 공동체의 관념을 떠올려 볼 수 있었다. 코헨이 이러한 공동체의 관념이 롤즈적 가치와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논증하지 않는 이상, 차등 원칙을 확장적이고 엄격하게 해석하여 평등주의적 에토스를 롤즈의 체계 안에서도 정초시키고자 했던 코헨의 야심찬 시도는 미완에 그칠 수밖에 없다.

## 참 고 문 헌

Cohen, G. A. *Rescuing Justice and Equality*.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2008.

Daniels, Norman. "Democratic Equality: Rawls's Complex Egalitarianism", *The Cambridge Companion to Rawl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Dong-Ryul, Choo. "On Reciprocity in Rawls's Theory of Justice - Its Relation to the Difference Principle",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140 (2019), pp.125-151.

Estlund, David. "Liberalism, Equality, and Fraternity in Cohen's Critique of Rawls" *Journal of Political Philosophy* 6 (1998), pp. 99-112.

Rawls, John. *Political Liberalis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6.

\_\_\_\_\_. *A Theory of Justice*. Revised Edition.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9.

\_\_\_\_\_. *Justice as Fairness: A Restatement*.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2001.

Titelbaum, Michael. "What Would a Rawlsian Ethos of Justice Look Like?", *Philosophy & Public Affairs*, Vol.36, No.3 (Summer 2008), pp.289-322.

## Abstract

# The Difference Principle in Justificatory Community

Sang-Hun Lee

Department of Philosoph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his discussion of "justice as fairness" in his book *A Theory of Justice*, John Rawls describes "a well-ordered society," in which society is governed by a certain set of principles of justice shared by all its members. The *difference principle*, the second one from the set, delineates the justifiability of social and economic inequalities in a well-ordered society. According to the difference principle, social and economic inequalities are justified only if the inequalities function to benefit the worst-off in society, so that the worst-off are better off than in a society with equal distribution. A typical example Rawls presents is the inequality driven by economic incentives, in which high-skilled members of the society are incentivized to contribute to the society and thereby improving the status of the least well off.

However, Gerald Cohen doubts that the difference principle justifies the incentive inequality. Cohen argues that the principle actually dismisses the incentive inequality, on grounds that it is

inconsistent with Rawls's own description of his just society, such as justificatory community and mutual respect. According to Cohen, members of genuinely Rawlsian community would interpret difference principle such that it eventually denies high skilled laborers' incentive demands.

This paper examines Cohen's internal critique against Rawls. In section 2, I revisit the Rawlsian incentives argument and Cohen's rebuttal against it. I specifically focus on how Cohen develops his own interpretation of difference principle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justificatory community and mutual respect. In section 3, I introduce a major response from Rawlsian theorists against Cohen's critique. And I argue that their reasoning is actually not at all consistent with the Rawlsian theory. In section 4, I argue that in contrast to Cohen's approach in applying the Rawlsian concepts of justificatory community and mutual respect, these concepts are not specific nor well-defined enough to determine a particular way of interpreting the difference principle. To illustrate this point, I present a sketch of a well-ordered society in which the difference principle is interpreted such that inequality-generating incentives are allowed without violating the principles of justificatory community and mutual respect. I do *not* intend to interpret or defend Rawls. Rather, my ultimate goal is to show that given their highly abstract nature, the concepts of justificatory community and mutual respect do not necessarily lead to support Cohen's interpretation of the difference principle and his rebuttal of the incentives argument.

Keywords : The difference principle, incentive argument, incentive sensitivity, justificatory community, mutual respect, internal critique

Student Number : 2013-22783